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83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836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6가단2539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홍승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임채용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8. 1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6가단2539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피고 C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 김유성